

28. 우루과이(Uruguay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, 자영자	근로자, 자영자	-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22.5% (15% / 7.5%)	22.5% (15% / 7.5%)	-
노령연금 수급요건	가입기간 30년, 60세	가입기간 30년, 60세	고령노령연금 : 15년, 70세
노령연금 지급률(30년)	46%	46%	-
일시금	X	X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829년 ~ 1934년(특정 그룹의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법), 1919년(기여 및 비기여연금); 1966년(국가사회보장기관, 1967년 시행)
- **현행법** : 1995년(사회보험제도 및 개인계좌제도, 1996년 시행), 2007년(정치적박해로 고통 받았던 자를 위한 연금), 2007년(비기여연금, 2008년 시행), 2009년(유연사회보장제도), 2012년(국내폭력범죄희생자), 2013년(민간근로자를 위한 부분연금), 2014년(중증장애인), 2017년(특정인에 대한 개인계좌탈퇴)

2 제도형태

○ 사회보험, 개인계좌 및 사회부조

※ 연소득이 737,033 pesos (1인 기업) 또는 1,228,388 pesos (동업자 3인 이하 소상공인) 이하인 자영자는 소액 납부자를 위한 간편화된 제도에 등록할 수 있음. 이 제도에 따라 가입자는 월 1회 사회보장비를 납부하며, 금액은 월 예상소득 5,497 pesos를 기준으로 산정됨

3 적용대상

○ 사회보험

- 당연적용 : 근로자 및 자영자(농촌근로자와 가사근로자를 포함)
- 특별제도 : 은행 직원, 공증인, 대학원생, 소액 납부자로 등록된 자영자, 군인 및 경찰

○ 개인계좌

- 당연적용 : 1956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근로자 및 자영자이거나 1996년 4월 1일 이후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였고 월 소득이 57,846 pesos를 초과하는 근로자 및 자영자
- 임의적용 : 1956년 4월 1일 이전 출생한 근로자 및 자영자이거나 월 소득이 57,846 pesos를 초과하는 근로자 및 자영자
- 특별제도 : 은행 직원, 공증인, 대학원생, 군인 및 경찰

- 사회부조 : 빈곤 거주자 또는 국내폭력범죄 희생자(정치적 박해로 고통받았던 자들을 위한 특별연금 대상 우루과이 거주 시민)

4 재원조달

○ 가입자, 자영자

- 사회보험
 - 월 총 가입소득의 1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 소득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 : 57,846 pesos
 - 월 소득 57,846 pesos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50%를 개인계좌에 할당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은 평균임금지수변동을 토대로 매년 조정됨
 - 가입자의 보험료는 간접적으로 현금질병급여, 출산급여, 실업급여 및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사용됨
- 개인계좌
 - 57,846 peso를 초과하는 금액의 15%는 개인계좌제도에 납부
 - 개인계좌에 납부하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장애 및 유족보험 가입소득의 평균 2.468%, 행정수수료에 대한 평균 1.37%를 포함(2018년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저 월 소득은 57,846 pesos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최대 월 소득은 173,539 pesos
 - 자발적으로 개인계좌제도에 납부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월 가입소득 57,846 pesos 까지 보험료의 50%를 개인계좌제도에 할당하고 50%는 사회보험제도에 납부, 월 가입소득이 57,846 pesos ~ 86,770 pesos 인 경우 보험료 100%를 사회보험제도에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
 - 월 소득이 173,539 pesos를 초과한 자영자는 초과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개인계좌 제도에만 임의 납부할 수 있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하한 소득은 평균 임금지수 변동에 따라 조정됨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
 - 임금지급총액의 7.5%. 위험직종의 경우 부가보험료 있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하한 소득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 : 173,539 pesos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소득은 평균 임금지수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됨
 - 사용자의 부담금 또한 현금질병급여, 육아급여, 실업급여 및 가족수당의 재원으로 사용됨
- 개인계좌,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사회보험 : 연금지출에 대한 결손액 총당; 사용자로서 납부
- 개인계좌 : 없음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납부된 또는 인정된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인 60세 도달자
 - 여성의 경우 자녀 1명당(출산, 입양 포함) 1년씩 인정되어 최대 5년의 가입기간 추가 인정 가능. 위험직종 종사자의 경우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됨
 - 연기연금 : 70세까지 또는, 가입기간이 35년이 될 때까지 중 먼저 도달하는 기간까지 연기연금 가능
 - 노령보조금(소득조사) : 70세 이상이어야 함
 - 소득조사 :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16,288.99 peso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(2020.1.1.일부로 16,722.88 pesos)
 - 해외 지급 가능
- 노령연금(개인계좌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35년 이상인 60세 도달자. 65세 도달자의 경우 납부기간 요건 없음
 - 해외 지급 가능
- 고령노령연금(사회보험 및 개인계좌)
 - 납부된 또는 인정된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70세 도달자. 연령요건은 가입기간에 따라 단축됨(가입기간이 17년 이상인 경우 69세 ~ 25년 이상인 경우 65세)
 - 노령보조금(소득조사) :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보험 고령연금을 수급하고 있어야 함
 - 소득조사 :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16,288.99 peso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(2020.1.1.일부로 16,722.88 pesos)
 - 해외 지급 가능

- 부분연금(사회보험)
 - 정년 도달 이후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단시간근로자로 다시 근로하고 사회보험 노령 또는 고령연금 수급권이 있는 자에게 지급
 - 해외 지급 가능
- 정치적 박해로 고통받았던 자를 위한 특별연금(사회보험)
 - 근로기간이 10년 이상인 60세 도달자로서 1973년 2월 9일부터 1985년 2월 28일 기간 동안 정치 또는 노조와 관련된 이유로 추방, 감금, 해고된 자에게 지급
 - 다른 기여형 사회보장급여와 중첩될 수 없음
- 비기여노령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극빈자로 판정된 70세 도달자; 또는 심각한 생필품 부족으로 판정된 가구에 거주하는 65-70세 도달자
- 정치적 박해로 고통받았던 자를 위한 특별연금(사회부조)
 - 1973년 2월 9일부터 1985년 2월 28일 기간 동안 정치적 이유로 1년 이상 투옥된 자에게 지급, 정치적 박해로 고통받았던 자를 위한 특별연금(사회보험제도)와 중첩불가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 및 개인계좌)
 - 모든 근로활동이 불가능하고 장애 정도가 66% 이상으로 판정받았으며 장애발생 전 가입된 근로기간이 2년(25세 이상) 또는 6개월 이상(25세 미만)이어야 함
 - 사고로 인한 장애인 경우 최소 가입기간 요건 없음
 - 가입자가 근로를 중단한 이후 장애가 발생하였고 다른 사회보험 또는 사회부조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상의 가입된 근로기간으로 연금이 지급될 수 있음(거주요건 적용)
 - 특별수당 : 특별교육기관 출석과 관련된 교통 및 기타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저소득자에게 지급됨
 - 해외지급 가능
- 부분장애급여(사회보험 및 개인계좌)
 - 현재 직업에서 근로할 수 없고 장애정도가 50~66%로 판정받았으며 장애발생 전 가입된 근로기간이 2년(25세 이상) 또는 6개월 이상(25세 미만)이어야 함
 - 사고로 인한 장애인 경우 최소 가입기간 요건 없음
 - 급여는 일시적이며 근로능력 재평가에 따라 계속 지급여부가 결정됨
 - 사회보장은행의 지역의료위원회가 근로능력을 평가함
 - 해외지급 가능
- 비기여장애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영구장애이거나 우루과이 거주기간이 15년 이상인 중증장애가 있는 자
 - 재산조사 : 수급권자의 월 근로소득은 12,462 peso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비근로자는 11,160.29 peso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. 수급권자의 배우자, 형제·자매, 부모 및 자녀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. 자산조사 또한 적용되며 중증장애가 있는 자는 소득 및 자산조사가 면제됨
 - 특별수당 : 특별교육기관 참석 관련 비용 및 교통에 대한 수요 기준으로 저소득자에게 지급

- 폭력범죄 희생자를 위한 장애연금(사회부조, 소득조사)
 - 폭력범죄 희생자로 완전영구장애가 있고 모든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었으며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서 지급되는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지급
 - 사회보장은행이 승인한 또는 지정한 의사의 의학 검진이 요구될 수 있음
- 간병수당(사회부조)
 -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월 70시간 이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며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29세 미만 또는 81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
 - 비시민권자들은 청구 직전 우루과이에서 10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함
 - 재산조사 : 1인당 월 가구소득은 가족 상황과 필요간병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음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 및 개인계좌)
 - 사망자가 근로하고 있었거나 노령 또는 장애연금, 급여, 출산, 산재,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; 또는 실업급여가 중지된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됨
 - 가입기간은 근로 중단 후 최고 12개월까지 연장됨; 보험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음
 - 유족연금은 퇴직·취업자 또는 실업자가 실종한 경우 지급할 수 있음
 - 수급가능 유족 : 미망인(홀아비), 파트너(동성 또는 이성), 위자료를 받았던 피부양 이혼 배우자(동성 또는 이성), 21세 미만인 미혼 고아(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18세,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), 피부양 장애부모
 - 유족연금은 퇴직·취업자 또는 실업자가 실종한 경우 지급할 수 있음
 - 미망인 또는 여성파트너는 가입자 사망 전 12개월 동안의 월 평균소득이 188,359.27 peso 이하여야 함. 홀아비 또는 남성파트너는 월 평균소득이 108,306.57 pesos 이하 여야 함; 월 소득 50,543.07 pesos 이하인 경우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며, 월 소득이 50,543.07 pesos 초과하고 108,306.57 pesos 미만인 경우 홀아비 또는 남성파트너는 사망자와 경제적 피부양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함(2020년 1월 기준)
 - 해외지급 가능
- 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연금(사회부조)
 - 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/그녀의 피부양자에게 지급
 - 수급가능 피부양자 : 배우자 또는 폭력범죄 피해자로 사망한 자의 동거인, 근로능력이 없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(미혼이며 모든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연령제한 없음),
 -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서 지급된 다른 사회보장급여와 중첩될 수 없음
-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특별수당(사회부조)
 -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피부양자 : 사망 당시 21세 미만의 미혼자녀(근로능력이 없고 부양수단이 없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
 - 교육기관 등록 및 정기 출석, 정기 의료검진 증빙을 제출해야 함. 피부양자녀가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능력평가는 3년마다 갱신됨

-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특별수당은 해외 지급 가능
- 장제비 :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, 해외지급 가능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의 월 참조소득의 45%에 30~35년의 근로기간 1년당 소득의 1%씩 연금액 증가하고 35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은 1년당 0.5%씩 연금액 가산
 - 참조소득은 퇴직 전 10년 간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또는 최고소득 20년 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 105% 중 높은 금액으로 함
 - 연기연금 : 35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정년 이후의 가입기간 1년당 3%씩 최대 30%까지 연금액 증가; 가입기간이 35년 미만인 경우 1년당 2%씩 증가됨
 - 월 최저연금액은 12,150.45 pesos(2020년 1월부터 13,557 pesos)
 - 월 최대연금액은 47,723.24 pesos(사회보험 및 개인계좌) 또는 70,572.54 pesos(사회보험만)
 - 노령보조금(사회보험, 소득조사) : 월 2,890 pesos 지급
 - 급여 조정 : 전년 평균 임금지표에 따라 연간 조정됨
- 노령연금(개인계좌)
 - 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 계좌 잔액을 사용해야 함
 - 연금 급여는 가입자의 계좌 잔액, 첫 연금 수급 시 기대수명, 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이자율을 토대로 계산됨
 - 급여 조정 : 전년 평균 임금지표에 따라 조정됨
- 고령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월 평균소득의 50%에 최소가입기간(15~25년)을 초과하는 가입기간 1년당 1%씩 가산한 (최대 14%까지 가산) 금액 지급
 - 참조소득은 퇴직 전 10년 간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 또는 최고소득 20년 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 105% 중 높은 금액으로 함(20년 미만인 경우 총 가입기간으로)
 - 월 최저연금액은 12,150.45 pesos(2020년 1월부터 13,557 pesos)
 - 월 최대연금액은 47,723.24 pesos(사회보험 및 개인계좌) 또는 70,572.54 pesos(사회보험만)
 - 노령보조금(사회보험, 소득조사) : 월 2,890 pesos 지급
 - 급여 조정 : 전년 평균 임금지표에 따라 연간 조정됨
- 고령노령연금(개인계좌)
 - 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연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총 계좌 잔액을 사용해야 함
 - 연금 급여는 가입자의 계좌 잔액, 첫 연금 수급 시 기대수명, 보험회사에서 제공되는 이자율을 토대로 계산됨
 - 급여 조정 : 전년 평균 임금지표에 따라 조정됨

- 부분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가 수급 중이거나 수급권이 있는 노령/고령연금액의 50% 지급
 - 급여 조정 : 전년 평균 임금지표에 따라 연간 조정됨
- 정치적 박해로 고통받았던 자를 위한 특별연금(사회보험)
 - 월 20,770 pesos(2020년 1월부터 22,595 pesos)
 - 급여 조정 : BPC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됨
- 비기여 노령연금(사회부조, 재산조사)
 - 월 11,160.29 pesos 지급
 - 급여 조정 : 평균임금지수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됨
- 정치적 박해로 고통받았던 자를 위한 특별연금(사회부조)
 - 월 35,309 pesos(2020년 1월부터 38,411.50 pesos)
 - 급여 조정 : BPC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됨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의 월 참조소득의 65% 지급
 - 참조소득은 장애 발생 이전 10년 동안 가입자 월 평균소득 또는 최고소득 20년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 105% 중 큰 금액 지급(가입자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총 근로연수가 참조소득으로 산정됨)
 - 부분장애급여 : 가입자의 참조소득의 65%가 최대 3년까지 지급됨
 - 최저연금액 : 월 12,150.45 pesos(2020년 1월부터 13,557 pesos)
 - 최대연금액 : 월 47,723.24 pesos(2020년 1월부터 51,798.80 pesos)
 - 급여 조정 : 전년 평균 임금지표변동에 따라 조정됨
- 장애연금(개인계좌)
 - 장애 발생 이전 10년 동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45% 지급
 - 개인계좌의 잔액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로 이전됨
 - 부분장애급여 : 장애 발생 이전 10년 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45%를 최대 3년까지 지급
- 비기여 장애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월 11,160.29 pesos
 - 특별수당 : 월 교통비 2,696.62 pesos 또는 월 재활비 5,829.01 pesos 지급(2020.1월)
 - 급여 조정 : 전년 평균 임금지표변동에 따라 조정됨
- 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장애연금(사회부조)
 - 월 24,924 pesos(2020년 1월부터 27,114 pesos) 지급
 - 급여 조정 : BPC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됨
- 간병수당(사회부조)
 - 최대 월 19,108.4 pesos(2020년 1월부터 20,787.4 pesos) 지급
 - 급여 조정 : BPC 변동에 따라 연간 조정됨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 및 개인계좌)
 - 유족 수에 따라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66~75% 지급
 - 기타 수급가능 유족이 없는 경우,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 50%를 이혼한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지급. 수급가능 고아가 있는 경우 70%, 수급가능 고아는 없지만 기타 수급가능 유족이 있는 경우 60% 지급
 - 기타 자격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자와 5년 이상 동거한 미망인(홀아비), 이혼한 배우자, 파트너(동성 또는 이성)에게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를 균분 지급. 기타 수급가능 유족은 있으나, 고아가 없는 경우 60%임; 나머지는 기타 수급가능 유족에게 균분 지급됨. 미망인 (홀아비)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, 연금액 100%가 기타 수급가능 유족들에게 균분 지급됨
 - 유족연금은 유족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30세 미만인 경우 2년간 지급; 30세~39세인 경우 5년간 지급; 40세 이상인 경우 종신 지급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기간 동안 지급
 - 미망인(홀아비)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21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일시적 유족 연금이 연장될 수 있음
 - 미망인(홀아비)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수급권 소멸
 - 개인계좌제도 가입자의 유족을 위하여, 개인계좌에 적립된 자본(보험료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)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로 이전됨
 - 유족연금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의해서만 외국으로 송금될 수 있음
 - 급여 조정 : 평균 임금지표에 따라 조정됨
- 비기여 유족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 : 월 7,692 peso
- 폭력범죄 희생자를 위한 유족연금(사회부조) : 월 23,088 peso
-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수당(사회부조) : 월 10,292 peso
- 장제비 : 최대 22,736 peso의 장례비용 지급

7

관리운영기관

○ 노동.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)

- www.mtss.gub.uy
- 전반적인 감독

○ 사회보험은행(Social Insurance Bank)

- www.bps.gub.uy
- 사회보험제도 감독 및 운영

○ **우루과이 중앙은행(Central Bank of Uruguay)**

- www.bcu.gub.uy
- 연금기금운용회사 및 보험회사 감독

○ **연금기금운용회사(AFAPs)**

- 개인계좌 관리

<2019년 ISSA 자료>